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212호

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
조례안

제 출 자	허명숙 의원 등 5명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12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15.

대표발의자: 허명숙

공동발의자: 조용훈, 조배식,
민병춘, 홍태의

1. 제안이유

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맨발걷기길 조성(안 제5조)
- 라.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
- 나. 조례안예고: 2023. 11. 15. ~ 11. 19.(5일간)

□ 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 걷기”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길”이란 황토,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.
3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논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방안
2.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확충
3.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·홍보
4.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
5.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(면적)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·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맨발걷기길 조성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 등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2.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

제6조(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발굴

2. 세족대, 신발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관리

3.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7조(포상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논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허명숙 의원 등 5명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